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2-13

부 산 고 등 법 원

창원제1행정부

판 결

사 건	(창원)2019누10842 취득세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A
	소송대리인 법무법인 [redacted] 담당변호사 [redacted]
	소송복대리인 변호사 [redacted]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장
제1심 판결	창원지방법원 2019. 6. 5. 선고 2019구단10758 판결
변론 종결	2019. 9. 4.
판결 선고	2019. 10. 2.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8. 8. 31. 원고에게 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20-02-13

이 유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문 제2쪽 4~5행의 "지방세법(2015. 12. 29.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11조 제2항 제7호 나목"을 "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"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, 위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.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.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박준용

판사 안좌진

판사 서범욱